

학술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술진흥연구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,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부교수이상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②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년 교원 선정
2. 학술 대상자 선정
3. 관련 제 규정
4.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이 된다.

부 칙(2015. 10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